

펀드계좌개설

최근개정일: 2024.04.30

Key Point

- ✓ TR.2105 펀드개별계좌 개설 → TR.2125 서브계좌 개설 → TR.7603 펀드추가매수
- ✓ 펀드투자 시 신연금저축계좌(55)를 개설, ETF 투자 시 연금위탁계좌(15) 개설 (동시 개설 가능) 추후 별도로 연금저축위탁(15)계좌 개설 가능
- ✓ 펀드 서브계좌 개설 시, 고객의 투자성향과 상품위험도를 확인하고 금소법 적용단계를 진행

업무개요

가. 펀드 개별계좌 개설(53)

- 1) 펀드투자(투자신탁, 수익증권 등의 용어도 사용)를 위해 개설하는 개별계좌로 입출금이 발생한다. 하위로 서브계좌를 개설하여 펀드매매를 할 수 있다.
- 2) TR.2105 계좌개설 > 투자신탁 탭에서 개설이 가능하며,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상세는 일반투자신탁(53)이다.

나. 연금저축 개별계좌(55), 연금저축위탁(15), CMA(51)

- 1) 연금투자위해 개설하는 계좌로, 펀드투자를 위한 신연금저축(55), ETF투자위한 연금위탁(15), 연금수령위한 CMA(51)계좌를 개설한다.
- 2) 개설 전 금융기관 한도조회(TR.2033)를 진행하고, 연금개시예정일 (가입일 이후 5년경과, 만 55세 이후) 지정하여 개설하고, 최소납입금액 1,000원 이상을 납입 요청한다.

다. 펀드 서브계좌 개설

- 1) 실제 펀드매매가 일어나는 게좌이며, 지점번호3자리-(상품코드2자리 53,55)-계좌번호 6자리 이후 제공되는 3자리가 서브계좌 번호이다
- 2) 서브계좌는 TR.2125에서 개설 가능하며, 동일펀드로 여러개의 서브계좌 개설이 가능하다.
- 3) 개설 전 고객 투자성향과 상품위험등급을 확인하여 ,부적합/부적정/고령여부/고난도상품여부 등에 맞춰 필요서류를 징구하며, 약관/핵심설명서/거래확인서/금융소비자권리설명서를 교부한다.
- 4) 현재 개설 가능한 상품상세 (2024, 4,30, 기준)

상품상세(TR.2125)	상품상세 설명
61. 일반투자신탁	일반적인 펀드계좌로 임의식/적립식을 해당구분에서 선택하여 개설
67. 연금저축	상품구분 55 신연금계좌의 서브계좌 개설 시 선택
62. 비과세종합저축	~2025.12.31.까지 가입 가능. 비과세혜택있음
84. 벤처투자신탁	코스닥벤처펀드 가입 위해 선택, ~2025.12.31.까지 가입 가능
6A. 분리과세 부동산리츠공모	~2026.12.31.까지 가입 가능
6C. 청년형 장기펀드	~2024.12.31.까지 가입 가능
6D. 분리과세하이일드펀드(2023)	~2026.12.31.까지 가입 가능
73. MMF전용	법인 MMF 전용으로 개설 시 선택
80. 해외뮤추얼펀드	금융상품영업부 역외펀드 설정 시 선택

서비스별 가능여부 / 가능시간

가. 가능시간

1) 내점 / ODS : 영업일 영업점 업무시간 내 2) 은행제휴개설 : 영업일 은행 업무시간 내

3) 비대면개설 : 365일 08시~23시 (단, 온라인계좌개설은 영업일 08시~21시)

* 펀드 서브계좌 개설은 전매체 파워베이스 온라인업무마감 전까지 가능(통상 08시~21시)

나. 펀드계좌개설

구 분	ODS	내점	유선	대리인	NET	온라인채널1	제휴은행 ²
펀드 개별계좌 개설	0	0	Х	0	Х	0	기업은행
신연금저축계좌 개설	0	0	X	0	Х	0	X
펀드 서브계좌 개설	0	0	Х	0	0	0	X

1) 비대면 계좌개설, 온라인 계좌개설로 펀드 개별계좌 및 신연금저축계좌 개설 가능 (단, 비대면 신연금저축 계좌 개설 시 '일반'으로만 개설 가능하며 '수관용' 개설은 불가)

2) 기업은행에서 새로운 종합계좌에 펀드계좌를 개별계좌로 개설 가능

징구서류

기 서		개인	법인		
개설	본인	가족대리인	일반대리인	대표자	일반대리인
계좌주 실명확인증표	•	_	•	-	
대리인 실명확인증표	-	•	•	-	•
대표자 실명확인증표	-	_	_	•	-
가족관계 확인서류	-	•	_	-	-
사업자등록증 사본	-	_	_	•	•
위임장	-	•	•	-	•
인감증명서	-	_	_	-	-
당사양식	계좌개설신청서, 거래인감/서명 * 관련서류 문서보존기한 영구보관				

[참고] 개인고객

- □ **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의** 자를 말하며, 만 19세 미만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 성년에 준해서 업무처리 가능. 단, 선물옵션 계좌개설은 불가함
- □ 가족대리인이 미성년자 계좌개설시

- 법정대리인 :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 제출 (친권자확인용)

법정대리인을 본인으로 간주하여 업무처리 가능 (친권자의 한해서 파출허용)

- 가족대리인 : 조부모가 미성년자 개설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첨부

- □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3개월
- □ 인감증명서 징구시 위임장 날인은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징구시 거래인감 날인
- □ 대리인 방문을 통한 계좌개설시 본인(계좌주)에게 유선상으로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한 내용을 확인 및 녹취 하여야 함 (단, 상임대리인, 법정대리인, 법인대리인 제외)

[참고] 법인고객

- □ 법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는 업무처리시
 - 위임장란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을 날인, 단 사용인감계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인감 날인
- □ 법인명의로 개설되는 법인계좌는 반드시 인감만 가능함(대표자 서명 불가)
- □ 사업자등록증 내 **각자대표**의 경우 각자 대표자 중 **1인의 위임장** 징구 가능하나, 공동대표의 경우 각 공동대표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징구
- □ **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**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, 대표자인 법인의 법인인감증명, 대표자인 법인 대표의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징구
- □ 사용인감계 최초 제출시 법인인감증명서 징구
 - 추가 계좌개설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하며 기존에 징구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대조·확인 후 사본은 합철하여 보관해야 함
 - 단, 법인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므로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생략 불가

[참고] 금융상품매매대리인

- □ 펀드매매를 대리하는 금융상품매매대리인을 등록하면 **펀드추가매수와 펀드매도가 가능**하다 단, 펀드 신규가입을 위한 서브계좌개설은 금융상품매매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
- □ 금융상품매매대리인을 지정하려면 주문대리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

업무 Flow

가. 펀드 개별계좌(53) 개설

① 실명확인	→	② 고객성향 및 상품위험도 확인	→	③ 개별계좌개설 (TR.2105)	→	❹ 고객교부	→	⑤ 결재 및 마감
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구 분	내 용
1 실명확인	 ● 신청자별(개인/법인/외국인) 작성서류와 징구서류 접수 계좌개설신청서 및 개설정보에 따른 추가서류, 실명확인 등 ● 파출(방문) 및 대리인(법정대리인 제외)에 의한 계좌개설시 고객과 유선통화 (파 출) 계좌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본인(계좌주)과 통화하여 계좌개설 및 각종 약정 등 요청사실 및 서류 직접 작성 여부를 확인.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고객의 경우휴대폰 본인인증절차 진행 후 계좌개설 신청서에 통화일시 기록 (대리인) 본인(계좌주)에게 유선으로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한 내용 확인 및 녹취 진행 후계좌개설 신청서에 통화일시 기록 실명확인 진위여부 확인 절차 진행 : [TR.2740]
② 고객성향 및 상품위험도 확인	 펀드개별계좌 개설은 대부분 서브계좌개설을 동반하므로, 개설 전 고객성향 및 상품위험도를 확인하여 적합한 상품권유를 위한 금소법 적용단계 필요 투자자정보확인: 고객투자성향, 만기여부, 개인/법인여부, 고령자 여부 확인 상품위험도 확인 성향과 맞지 않는 경우 부적합확인서 [TR.2147] 투자적합성보고서 등록 [TR.2868] 고난도인 경우 녹취숙려 (단 안정추구형 이하 부적합&고령자인 경우 판매불가)

	- 고위험(높은 위험 이상) & 안정추구형 이하인 경우 판매불가 * 단, 안정추구형 이하인 경우 부적합확인서 작성 하여도 고위험 상품 가입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부 확인 바랍니다 - 적정성원칙 : 대상상품인 경우 적정성보고서 등록 [TR.2869] * 부적정인 경우 고객 사인 받아 사본교부하고 원본 보관 ● 고령자 : 녹취숙려, 투자권유유의상품은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
③ 개별계좌개설 (TR.2105)	 일반투자신탁(53): TR.2105 투자신탁 탭 > 상품상세 일반투자신탁 선택 기 개설된 종합계좌가 없는 경우 종합계좌 개설 후 일반투자신탁 계좌 개설이 가능 투자정보확인서, CDD, FATCA,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이 만료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재등록/재확인 후 개설 진행 약관변경통보지를 지정 시 이메일을 선택하고 싶으면 고객정보 내 이메일 필수 서브계좌개설은 [TR.2125]에서 진행, 펀드매수는 [TR.7603]에서 진행 * TR2125 오른쪽 상단 "펀드매수" 클릭 후 펀드 매수로 연결
4 고객교부	 고객교부 수익증권약관, 가입펀드 핵심설명서, 금융소비자권리설명서 * 청년형인 경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 고객처리확인서, 투자자정보확인서 부적합확인서 : 성향이 맞지 않은 경우 * 단, 안정추구형 이하인 경우 부적합확인서 작성 하여도 고위험 상품 가입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부 확인 바랍니다 적정성보고서 : 부적정인 경우 고객사인 받아 원본보관, 사본 교부
⑤ 결재 및 마감	관련서류 지점업무팀장 결제 후 편철하여 보관 문서보존기한 : 영구보관

나. 신연금저축 개별계좌(55), 연금저축위탁(15), CMA(51)

0

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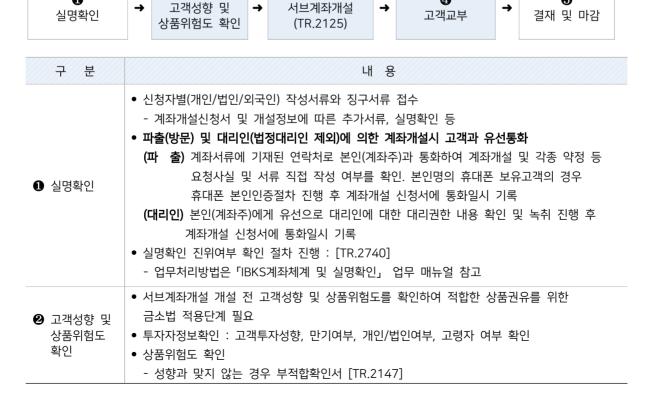
● 실명확인	→	전 금융기관 한도조회	→	연금계좌개설 (TR.2105)	→	❹ 고객교부	→	⑤ 결재 및 마감		
구 분		내 용								
1 실명확인	- п (1)	 신청자별(개인/법인/외국인) 작성서류와 징구서류 접수 계좌개설신청서 및 개설정보에 따른 추가서류, 실명확인 등 파출(방문) 및 대리인(법정대리인 제외)에 의한 계좌개설시 고객과 유선통화 (파 출) 계좌서류에 기재된 연락처로 본인(계좌주)과 통화하여 계좌개설 및 각종 약정 등 요청사실 및 서류 직접 작성 여부를 확인. 본인명의 휴대폰 보유고객의 경우휴대폰 본인인증절차 진행 후 계좌개설 신청서에 통화일시 기록 (대리인) 본인(계좌주)에게 유선으로 대리인에 대한 대리권한 내용 확인 및 녹취 진행 후계좌개설 신청서에 통화일시 기록 실명확인 진위여부 확인 절차 진행: [TR.2740] 업무처리방법은 「IBKS계좌체계 및 실명확인」업무 매뉴얼 참고 								
 ● 주민등록번호별 전금융기관 세금우대등록현황 [TR.2033]에서 연금가입한도 조회 ● 화면 하단 저축종료 [36.연금저축] 선택하여 미사용금액 한도 내 가입 가능 ● 연금펀드계좌는 전금융기관 통합 1,800만원 이내로 가입가능 (퇴직연금 가입자 부담금 및 다른 금융기관 연금저축계좌 합산하여 한도제한) ● 단,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600만원 										

4

6

③ 개별계좌개설 (TR.2105)	 ● 신연금저축 개별계좌(55): TR.2105 신연금저축 탭 선택 (연금위탁 15 동시 개설 가능) ● 연금수관 개설인 경우 개설구분을 수관으로 체크하여 개설 ● 기 개설된 종합계좌가 없는 경우 종합계좌 개설 후 일반투자신탁 계좌 개설이 가능 ● 투자정보확인서, CDD, FATCA,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이 만료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재등록/재확인 후 개설 진행 ● 가입시점에 적립기간, 연금수령개시예정일(가입일 이후 5년경과, 만 55세 이후) 지정 ※ 연금수령개시 예정일을 지정하더라도 연금수령시 지점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개시신청필요 ● ETF투자위해 연금위탁계좌(15) 동시 개설하려면 TR.2105 신연금저축탭에서 위탁매매 체크 추후 별도 개설 할 경우 TR.2105 위탁탭에서 상품상세 [연금저축위탁계좌] 로 추가개설 ● 추후 연금수령을 위해 반드시 CMA(51)계좌도 개설진행 ● 개설이 완료되면 최소납입금액(1,000원) 이상의 금액입금을 고객에게 요청 ※ 최소납입금액 미납입시 추후 연금개시 신청 가능일자가 늦어질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 참고) 연금저축펀드계좌는 가입기간을 연금 납입액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" (기재부 소득세제과 유권해석, 19.06.12.) ● 서브계좌개설은 [TR.2125]에서 진행, 펀드매수는 [TR.7603]에서 진행 * TR2125 오른쪽 상단 "펀드매수" 클릭 후 펀드 매수로 연결
④ 고객교부	 ● 고객교부 -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,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, 연금저축계좌가입시유의사항, 금융소비자권리설명서 교부 - 고객처리확인서, 투자자정보확인서 - 부적합확인서 : 성향이 맞지 않은 경우 - 적정성보고서 : 부적정인 경우 고객사인 받아 원본보관, 사본 교부
6 결재 및 마감	• 관련서류 지점업무팀장 결제 후 편철하여 보과 • 문서보존기한 : 영구보관

다. 펀드 서브계좌 개설



	* 단, 안정추구형 이하인 경우 부적합확인서 작성 하여도 고위험 상품 가입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부 확인 바랍니다 - 투자적합성보고서 등록 [TR.2868] - 고난도인 경우 녹취숙려 (단 안정추구형 이하 부적합&고령자인 경우 판매불가) - 고위험(높은 위험 이상) & 안정추구형 이하인 경우 판매불가 - 적정성원칙: 대상상품인 경우 적정성보고서 등록 [TR.2869] * 부적정인 경우 고객사인 받아 사본교부하고 원본 보관 • 고령자: 녹취숙려, 투자권유유의상품은 고령투자자 상담확인서
③ 서브계좌개설 (TR.2125)	 투자정보확인서, CDD, FATCA,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이 만료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재등록/재확인 후 개설 진행 [TR.2146]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 등록/변경 화면에서 투자자체크리스트 진행 파출여부, 기관투자자여부 해당있는 경우 체크 과세유형 일반적인 경우는 일반과세, 연금저축은 비과세(계좌 내 펀드환매는 비과세됨) 상품상세에서 일반적인 펀드는 61.일반투자신탁, 연금펀드는 67.연금저축펀드로 개설 (상품상세 항목별 설명은 개요 참조) 펀드매수는 [TR.7603]에서 진행 정기적인 펀드매수가 필요한 경우, [TR.2402]에서 CMA→펀드 간 자동대체를 등록하거나 [TR.9322]에서 은행→펀드 간 CMS 약정등록을 할 수 있다
4 고객교부	● 고객교부 - 가입펀드 핵심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금융소비자권리설명서 교부 * 간이투자설명서는 운용사에서 제공하는 설명서로, 뉴턴 우측 업무시스템바로가기 중에 공모펀드자료 클릭하여 인터넷망에서 확인 가능(망간전송 실행 필수) - 고객처리확인서, 투자자정보확인서 - 부적합확인서 : 성향이 맞지 않은 경우 - 적정성보고서 : 부적정인 경우 고객사인받아 원본보관, 사본 교부
⑤ 결재 및 마감	• 관련서류 지점업무팀장 결제 후 편철하여 보과 • 문서보존기한 : 영구보관

위임전결 / 관련규정

- 가. 위임전결 : 업무팀장 전결
- 나. 관련규정
 - 방문판매 모범규준
 - 수익증권약관
 -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

관련화면

화면번호	화면명	화면설명
2105	계좌개설	펀드개별계좌, 신연금저축(55), 신연금위탁(15) 개설
2125	투자신탁펀드계좌개설/변경	펀드 서브계좌 개설
2145	투자정보확인서 등록/변경	고객투자성향 진단
2147	부적합거래확인서	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가입 시 등록
2868	투자적합성 보고서등록 및 출력	투자성향에 맞는 투자상품을 권유하는지 적합여부 등록
2869	투자 적정성 보고서 등록 및 출력	투자적정성 등록(부적정시 사인 받아 원본 보관, 사본 교부)
2033	주민등록번호별 전금융기관 세금우대 등록현황	연금펀드 개설 전 한도조회 (하단 저축종료 36.연금저축으로 조회)
7603	펀드추가매수	서브계좌에 펀드매수
2402	계좌간대체약정	계좌간자동대체 탭에서 CMA→펀드 간 자동대체약정
9322	CMS약정등록/해지	은행→펀드 간 CMS 약정등록

▼ 제・개정이력

제·개정일자	재·개정 내역	소관부서	작성부서 / 작성자
2024-04-30	· 업무매뉴얼 전면개편	상품전략부	업무개발부 김진아